

과제물 (Report) 작성요령 (2004-고의석®)

글자와 줄의 모양과 형식

1. 글자모양: 명조체나 고딕체 혹은 이에 준하는 폰트, 예) 바탕체, 신명조, 견명조, 중명조, 고딕, 신고딕, 바탕, 굴림체 등등.
2. 글자 크기: 10 포인트.
3. 줄 간격: 한글MS워드는 1 줄, 혹은 한글(97, 2002, 2003)의 경우 180%.

주의 사항: 과제의 제목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가지 종류의 폰트 형태와 크기를 사용할 것. 중요한 것은 모양의 일체성이지 보기 좋은 화려함이 아님!

문장의 모양과 형식

1. 문단의 첫 시작 줄은 들여쓰기 (Indentation)를 할 것.
2. 문장의 정렬은 왼쪽기준 정렬 또는 양쪽정렬로 할 것. 그러나 제목이나 기타의 예외 상황에는 필요에 의해 중앙정렬이나 다른 방식의 정렬을 사용할 수 있음.
3. 모든 페이지(맨 처음의 겉표지와 맨 뒤의 참고문헌목록 페이지를 포함한)의 오른쪽 위에 1부터 시작하는 페이지 번호를 달 것.

참고문헌 인용시의 주의 사항

1. 모든 참고문헌(그림, 도표 및 인터넷 자료와 강의 노트를 포함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의 자세한 방법들은 아래의 관련서적들을 참조할 것!**).
2.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을 다시 재 인용할 경우 두개의 저작 모두를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적어야 한다 (연세대학교발행, 새논문작성법, p. 191 참조할 것!).
3. 참고문헌을 **직접인용**(참고문헌의 원래문장을 그대로 사용) 할 경우 인용부호(“ ”)와 저자명, 년도 그리고 페이지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예) “각성은 불안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김기웅, 1970, 12-13). 그러나, **간접인용**(원문을 변형하거나 재해석하여 다시 쓴 경우)의 경우 페이지 번호는 생략해도 됨.
4. 문장 중에 언급된 참고문헌들은 반드시 보고서 마지막의 참고문헌목록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글의 본문에 나온 참고문헌이 참고문헌목록에 없거나, 혹은 그 반대로 목록에 있는 문헌이 글의 본문에는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6. 참고문헌 인용 및 재 인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예와 아래의 관련 서적(또는 각 대학들의 출판부에서 발행한 글쓰기방법에대한 서적)들을 참조 할 것.

관련서적:

연세대학교 연구처 (1998). 새논문작성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 (1999). 연구방법과 논문 작성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교재편찬위원회 (1998). 논문작성법, 건국대학교 출판부.

기타 주의 사항

1. 꼭 필요하지 않은 그림이나 사진, 기호, 특수문자, 이탤릭체, 음영, 굵은문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폰트 등은 본문에서 가능한한 사용하지 말 것. 보고서의 목적은 필요한 내용을 일체성있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는 것이지, 보기 좋은 화려함이 아니다!
2. 반드시 별도의 분리된 겉장(Title page)과 참고문헌목록(Reference page)이 있어야 한다.
3. 겉 표지에는 과제물의 제목, 과목명, 교수이름, 본인 이름과 학번, 제출일을 반드시 명시할 것.
4. 각주 혹은 미주는 특정사실이나 본문내용을 설명 또는 보완하기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인용문의 출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각주나 미주 대신에, 별도의 참고문헌목록을 작성한다.
5. 참고문헌 목록에 참고 문헌(서적, 논문, 잡지, 학술지, 인터넷, 인터뷰 등등)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저자, 제목, 출판날짜, 출판사를 적을 것.
6. 참고문헌 목록에, 참고문헌의 순서는 저자의 이름에 따라 가나다 (ABC) 순서로. 그리고 같은 저자의 목록들은 년도 순으로 정렬 한다.
7. 참고문헌 목록에 인터넷에서 참고한 자료를 적을 때에는 참조한 날짜와, 참조한 문서가 있는 곳의 정확하고 상세한 구체적인 주소(단순히 “.com ”으로 끝나는 홈페이지 주소가 아닌)를 적는다.
8. 문장의 인용 및 겉 표지와 참고서적 목록의 작성은 뒤에 나오는 예들을 반드시 참고 할 것.
9. 작성된 문서를 E-메일 첨부나, 디스켓 파일로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아래한글(95, 97, 2002, 2003)은 한글2002 포맷으로, 그리고 MS-Word는 MS-Word 2000 포맷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만 함.

1. 참고문헌 인용방법의 예 (본인이 직접읽은 primary source의 경우)

(원문): 같은 자극을 받은 경우에도 각기 다른 개인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Source: 김기웅. 심리기술. 1998, p. 243).

(직접인용의 예 1):한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김기웅 (1998, p. 243) 은 "같은 자극을 받은 경우에도 각기 다른 개인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직접인용의 예 2):.....한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같은 자극을 받은 경우에도 각기 다른 개인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김기웅, 1998, p. 243).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인용의 예):한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은 똑같은 자극이 가해져도 개인마다 서로다른 변인의 차이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 매우 상이한 행동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웅, 1998, p. 243). 따라서.....

** 직접 인용하는 글이 너무 길 경우 (4 ~ 5 줄 이상의 경우), 글 중간에 양쪽으로 들여쓰기된 단락을 따로 만들어서 표시한다:

.....한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같은 자극을 받은 경우에도 각기 다른 개인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선천적, 유전적인 성질과 후천적으로 경험되어 생긴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기웅, 1998, 243-244).

따라서 개인의 차이를 검정하는

2. 재인용 방법의 예 (타인이 이미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한 secondary source의 경우)

** 다음의 예들은 새논문작성법(1998, p. 191-192, 연세대학교 연구처)에서 참고함 **

다른 저작에서 인용된 저작을 다시 인용한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는 이 두 개의 저작

모두를 기재한다. 참고문헌페이지의 목록에서는 원저자와 발행년, 원문의 제목(서명)과 수록매체를 기재한 다음, ‘재인용:’ (외국문헌에서는 ‘quoted in’)이라는 어귀 다음에 실제 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서명을 기재한 다음, 발행사항을 원괄호 속에 기재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한다.

(재인용한 문헌의 참고문헌페이지 목록표기의 예):

Barden, Bertta Rickenhrode. 1937. Book numbers: A manual for students with a basic code rules. 재인용: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 1986), 223.

Zufofsky, Louis. 1931. “Sincerity and objectification”. Poetry, 37 (February): 269. Quoted in Bonnie Costello, Marianne Moore: Imaginary Possess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78.

위의 자료를 인용하는 글의 인용문에서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적용한 방식에 따라 기재한다.

인용문의 예)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Barden, 1937)
 shall be done (Zufofsky, 1931, p. 269).

3. 잘못된 재인용 방법의 예

김명옥(1986, p. 223)이 인용한 Barden (1937)의 글을 재인용할 경우:

문서의 분류와 정리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김명옥, 1986, p. 223).

문서의 분류와 정리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김명옥, 1986; Barden, 1937).

Barden (1937)은 문서의 분류와 정리는 예술에 가깝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김명옥, 1986, p. 223).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OK! :

..... 그리하여, 김명옥 (1986, p. 223)은 그의 저서에서 “문서의 분류와 정리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이라는 Barden (1937)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 1937년 Barden (재인용: 김명옥, 1986, p. 223) 은 그의 저서에서 문서의 분류와 정리는 예술에 가깝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겉표지의 예 ##)

각성, 불안, 스트레스의 비교: 각 요인들의 분석과
상호 차이 및 공통점에 대한 보고서

학번: 0469063

이름: 전지현

과목명: JB370-01, 스포츠 심리학

담당교수: 고의석

제출일: 2004년 10월 11일

참고 문헌

- 고흥환, 김기웅, 장국진 (1994). 운동행동의 심리학, 서울: 보경문화사.
- 박기웅 (1985). 스포츠 참여의 심리학적 기초, 한국체육학회지, 42, 73-93.
- 최병옥. (1998). 스트레스, 불안과 운동수행. 강의 파일 (online).
<http://user.chollian.net/~parkbo95/> (참고일: 2001. 2. 20).
- Allport, F. H. (1924). Social Psychology. Boston: Human Kinetics, Inc.
- Brayfield, R. S. and Smith, N. G. (1999).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 media richness and structural design. Sciences, 32, 229-234.
- Yasbus, D. S. (1956). The mind game. New York: Willy & Son Publishing.
- Barden, Bertta Rickenhrode (1937). Book numbers: A manual for students with a basic code rules. 재인용: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 1986), 223.
- Zufofsky, Louis. 1931. "Sincerity and objectification". Poetry, 37 (February), 269.
 Quoted in Bonnie Costello, Marianne Moore: Imaginary Possess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78.

(## 참고문헌 Page의 예 ##)

(학술진흥재단 2004년 8월호 소식지)

표절의 시대를 걱정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만 열

거의 20여 년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공부한 어느 외국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나와 잘 아는 학자를 지도교수로 하여 제출된 그 논문은 한국사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몇 년 전에 발표한 나의 논문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것이었다. 일일이 지적하여 시정토록 했지만, 아무리 외국인이 쓴 한국사 관련 논문이라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사람은 학위를 받았고, 그 후 외국에 나가 지금도 한국학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한 대학 교수가 남의 글을 베끼다시피 한 것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면직된 사례가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내가 지도하는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이 선학(先學)의 연구를 어떤 대목에서는 문단 전체를 통째로 베낀 사례가 있어서 학위논문 심사 자체가 보류된 적이 있었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느 대학에서 번역한 고전국역을 검토한 결과 그 상당한 부분이 기존의 어느 기관의 것을 베꼈다는 것을 알고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낀 적이 있다. 연구자에게 이런 유혹은 늘 따라다닌다. 필자 또한 그런 유혹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과 학생들에게 남의 연구성과를 원용할 때에는 엄격하려고 한다. 남의 것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 그것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요, 남의 생각을 빌렸을 경우에도 밝혀야 하며 남의 논문에 인용된 원전(原典)이나 1차 자료를 재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밝히도록 강조하고 있다.

남의 글을 자기의 것인 양 베끼는 것을 두고 표절(剽竊)이라고 한다. 표절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표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고 방법 또한 다양하다. 원전이나 1차 자료를 대하기 어려웠던 시절, 그것을 인용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자기도 그 원전에 접했던 양 행세한 경우가 있었다. 현재 학문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서도 이런 사례들이 보였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표절이다. 비슷한 사례이지만, 자신이 1차 자료에 접할 수 없었음에도 1차 자료를 본 것처럼 각주를 달아놓는 것도 매우 흔한 사례였다. 최근 어느 연구서에는 이런 표절도 있었다. 각주에 보이는 1차 자료명이 약자로 표기되었는데, 그 책 어디를 보아도 그 약자 자료명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른 연구에서 본 그 약자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자신이 매우 많은 자료를 직접 본 것처럼 자기과시를 한 셈이다. 이것은 자신의 연구가 1차 자료에 근거한 창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왜곡된 현상이었다. 남의 것을 베꼈으면서도 자신의 창의적인 것인 양하다가 망신을 당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인용된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표절자가 잘못 그대로 재인용해서 그 거짓됨이 이중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이메일이 발달하면서 표절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생들의 리포트에서 남의 글을 베끼는 것은 이제 상습화되었다. 베끼는 대상도 중후한 저술과 학술 논문뿐만 아니고 동료 학생들의 보고서까지 포함된다. 표절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것을 감추는 기법도 다양해졌다. 표절의 기법이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것은 거짓과 위선의 풍토가 만연되는 증거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사회적 질병은 바로 표절적 분위기 탓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물론 학문 연구에서도 1차 자료와 고독한 사유를 소외시키는 '표절적 분위기'는 어떻게든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터인데 그 방법이 쉽지 않다.

표절이 심화되는 것은 정보화사회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산업사회는 인간의 땀과 노력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사회였다. 거기에 비해 정보화사회는, 그 함의성과 지향성과는 달리, 정직과 노력 대신 남의 업적을 대가없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표절적 가치관'을 형성할까 두렵다. 표절 분위기가 확산되면 밤샘하면서 연구하는 풍토가 사라지게 되고 양심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학문도 퇴보하게 된다. 창의적인 학문이 없는 곳에 사회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이 시대에 학자적 양심의 회복은 표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부터 근절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표절시비 불거지나 ?

요즘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교수들의 표절시비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표절시비는 비단 타학계뿐 아니라 우리 체육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내용 자체가 앞으로 체육학계에서도 학문적으로 충분히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 생각되어 교수신문(1996. 12. 16)과 한겨레 21(제139호)에 게재된 표절관련 내용을 요약 살펴보기로 하겠다.

<편집부>

표절문제는 외국에서도 늘 골칫거리로 떠오른다. 어느 사회나 도둑이 있듯이 학문 세계에서도 표절자는 반듯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이 표절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표절이 드러났을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또한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문리대 대학원 안내책자에는 표절이야말로 학문할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표절로 인해 파면을 당했다. 미시간 대학에서는 이 사건을 표절의 가장 좋은 사례로 삼아 학부생을 위한 안내 책자에 게재하여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 하버드 대학도 책자를 통해 표절행위를 엄중 경고하는 한편, 표절에 관해 엄밀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표절은 또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되기도 한다. 가령 어떤 학자가 공공연구기금을 타서 연구한 성과가 표절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금은 표절 연구자를 상대로 법률적 제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9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신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던 앤터니 앤더슨이 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밝혀내고 학위를 박탈하였다. 또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게리 휴즈도 표절이 밝

혀지자 가차없이 학위를 취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대학신문과 학교 공고관에 게재하고 대학도서관에 비치된 논문도 폐기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표절시비가 주로 외국에서만 발생하였던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표절로 "S대 강단에 서다"라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에서는 "도덕성과 명예, 학문적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또는 "학문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등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당사자는 이 글을 읽고 학자의 양심과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론보도문"을 통해 열띤 논쟁을 벌인적이 있었다. 이들의 논쟁은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표절시비에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리라 생각되어 이 "반론보도문"을 요약·발췌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보도문에서는 "창작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이 아닌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쓴 논문이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옮긴 경우, 그것이 언제나 비난 가능성있는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령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어떤 사람이 “한국 공중파방송의 역사 및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과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다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국으로는 KBS, MBC, SBS 3개 방송사가 있다”는 취지의 문장을 적당한 위치에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쓴 논문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이 있다고 반드시 이를 인용각주를 표시하여 기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위의 예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를 너무 극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다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예컨대, 어떤 “법학 전공자가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장을 쓴 경우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문장을 사용한 논문이 존재한다고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누구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예를 생각해 볼 때 표절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문장과 동일 혹은 유사한 문장을 기술하였다고 언제나 비난 가능성 있는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난 가능성 있는 표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또 그 내용이 사회일반적인 상식은 물론이고 당해 전공분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지의 사실인 사항을 기술하는 경우, 확립된 실무를 기술하는 부분으로서 그 성질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표절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임은 단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를 좀더 전문적인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비난 가능성 있는 표절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계의 기본적인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어떠한 논

문(인용저작물)의 일부가 다른 논문(피인용저작물)의 일부와 인용각주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그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분량 여하,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피인용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 혹은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으로 인하여 인용저작물 전체의 창작성과 우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1) 어떤 글을 인용하거나 해설할 때 그 성질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2) 피인용저작물의 설명 자체가 다른 공식 문서에 제시된 설명을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관련 학자 또는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절을 문제삼지 아니하며, (3) 그 밖에 이미 확립된 일반이론이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널리 원용되는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인용저작물의 창작성과 우수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표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표절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표절시비가 논쟁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듯 싶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자들의 지적 소유권과 관련, 표절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구워질지 모를 일이다.

외국 대학의 경우는 표절의 문제를 자신의 치부로 감추려하지 않고 사회의 양심과 도덕성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은 쓴글의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남의 것을 베껴서 표절시비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표절은 학자 즉, 우리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